

유엔글로벌컴팩트이행보고서
(Communication On Progress)

(주)동성중공업

1. UN Global Compact 지지문

(주)동성중공업은 유엔글로벌컴팩트에 가입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4개분야 10대 원칙을 지지하고 이행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해왔습니다.

또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항상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도록 노력하여,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상황과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동향까지 파악하여 미래의 변화를 내다보고 나아가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특히 당사는 이해관계자인 고객, 주주, 협력업체 및 지역사회에 좀 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모든 임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동성중공업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꾸준히 정진해 나갈 것이며,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실천하는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10대 원칙 이행

원칙 1 기업은국제적으로선언된인권보호를지지하고존중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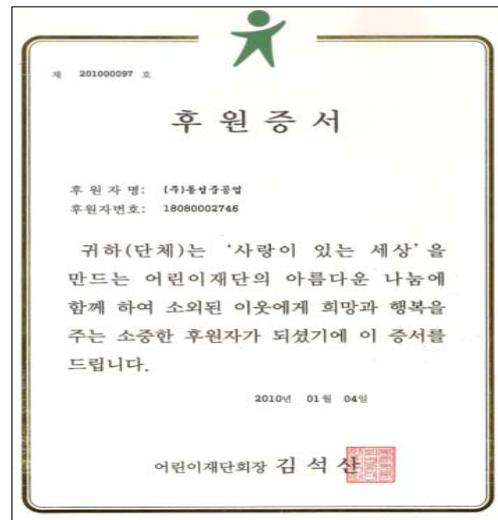
(주)동성중공업은 헌법 제 10 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을 지지합니다.

당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애망원의 몸이 불편한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어린이재단 등의 단체에 기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당사의 기부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인권 보호에 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애망원 방문 활동>



<어린이재단 후원증>

원칙 2 기업은인권침해에연루되지않도록적극노력한다.

(주)동성중공업은 이해관계자인 임직원, 주주, 지역사회의 인권을 절대 존중합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의해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고충이 접수되면 개인정보를 비밀로 하되,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성희롱과 성추행범죄를 추방하고 양성평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료 일부 발췌>

원칙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해야한다.

(주)동성중공업의 노사협의회는 노사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킴으로써 회사와 근로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임시회의와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임무를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제4장 35조(협의사항)에 의거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설명, 정보의 교환, 계획 수립, 안전처리 등을 내용으로 협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1.생산성향상과 성과배분
- 2.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 3.노동쟁의예방에 관한 사항
- 4.근로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5.안전. 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 6.인사. 노무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7.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등 고용조건의 일반원칙에 관한 사항
- 8.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에 관한 사항
- 9.임금의 지불방법 · 체계 · 구조등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10.신기계 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 11.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 12.종업원 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 13.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14.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또한, 임직원들과 경영정보에 대한 공유를 하고 최고경영자의 경영방향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고자 매월 회의를 진행하여 임직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원칙4 모든형태의 강제 노동은 배제해야 한다.

원칙5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철폐해야 한다.

원칙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주)동성중공업은 강제 노동금지에 관한 국가근로기준법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 임직원은 자발적으로 고용계약서에 동의 서명하며 그에 따라 강제노동을 금지·배제하며, 아동노동을 금지합니다.

(주)동성중공업은 당사의 취업규칙 제4장 1절 근로조건에 의거하여, 휴게시간을 제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회사의 취업규칙 제 4장 3절 연소자의 보호 및 남녀고용평등에 의거하여

1.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과 소정양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비치한다.

2.회사는 연소자 및 여자 근로자에 대해 유해·위험한 부서에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다

3.여자와 18세미만자에 대해서는 대구지방노동청장의 야간 및 휴일근로 인가를 득하여야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4.임산부 여성에게는 연장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제한하며,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의 연장근로는 1일 2시간, 주6시간, 연 15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5.여자 사원을 이유로 정년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6.여자 사원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에 신규사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여자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7.회사는 승진, 인사고과, 교육훈련 등의 기회부여에 있어서 여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한다.

8.임신 중의 여자 사원에 대하여는 산 전후를 통하여 90일간의 산 전후휴가를 준다.

원칙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해야 한다.

원칙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원칙9 환경 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주)동성중공업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한 생활속 작은 실천 운동으로 점심시간 전등 끄기, 컴퓨터 끄기, 사내 캠페인을 펼치고 이면지 재사용 등을 통해 종이 사용량도 줄이고 있습니다.

(주)동성중공업은 환경 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을 하여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1.태양광 발전소 운영 및 기술개발

- 발전소 운영 : 2009년 3월 (주)다인태양광발전소 상업발전 개시
- 기술개발 : 계절가변형 트랙카, 태양광가로등 구조물 등

(주)다인태양광 발전소

- 소재지:경북 의성군 다인면 산 64-17
- 면적:23,140m²
- 공사기간:2009.1.8 ~ 2009.2.28
- 상업발전개시:2009. 03. 02
- 발전규모:993.6 kWp



2.풍력발전 기술개발

- 기술개발 : 풍력발전기 구조물

(주)동성중공업은 앞으로도 환경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임은 물론 친환경 이슈의 확산을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원칙10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주)동성중공업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회사취업규칙 제3장 인사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등을 과대 또는 과소하게 사칭하거나 누락시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 2.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임금, 보상 등 급여 또는 기타의 이익을 얻었을 때
- 3.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중,수뇌 행위를 하였을 때

당사의 모든 임직원은 아직까지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직까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반부패 및 윤리경영의 가치를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동성중공업은 UN Global Compact가입을 기반으로 10대원칙을 지지하고 준수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